|  |  |  |
| --- | --- | --- |
|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1년 5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22차 회의 통과  法釋[2011]20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1년 5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제15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8월 7일  농촌집단토지과 관련되는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행정 재판실무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농촌집단토지의 권리인 또는 이해관계자(이하 토지권리인이라 함)가 행정기관이 내린 농촌집단토지 관련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제기한 소송은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수리범위에 속한다.  **제2조** 토지등기기구가 인민법원의 발효 재판문서, 집행협조통지서 또는 중재기구의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토지권속 등기행위를 수행한 후 토지권리인이 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권리인이 등기내용이 관련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3조**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과반수 촌인은 집단경제조직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모두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된 후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과반수의 원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토지사용권자 또는 실제 사용자가 행정기관이 그가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집단토지에 대해 내린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토지권리인이 토지비축기구의 행위가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기구 예속 토지관리부서를 피고로 해야 한다.  **제6조** 토지권리인이 향(鄕)급 이상 인민정부가 내린 토지소유권 확정결정이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재심을 거친 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서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토지 행정사건에 대해 재심기관에서 재심 신청 불수리 결정을 내렸거나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재심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재심기관을 피고로 해야 한다.  **제7조** 토지권리인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행정 강제조치 등 행정적 행위가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8조** 토지권속등기(토지권속증서 포함)가 발효 재판이나 중재재결 중에서 사건의 결정의거로 되어 이해관계자가 당해 등기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9조**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적 결정을 공고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기소 기간은 공고 확정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10조** 토지권리인이 토지관리부서가 실시 중에 확정한 토지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권리인에게 행정기관에 먼저 재결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토지권리인이 토지관리부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행위를 처벌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처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농촌집단토지를 징수할 때 징수대상 토지상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경우, 토지권리인은 물권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촌집단토지를 징수할 때 징수대상 토지상의 건물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실시할 때 건물 소재지가 이미 도시규획구역에 편입되어 토지권리인이 국유토지상의 건물 징수 보상기준을 참조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토지보상비를 공제해야 한다.  **제13조** 토지 행정사건 심리 중에서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조정을 하는 기간은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계속 협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심리하고 심리기간의 계산을 회복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가 내린 토지 반납 결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토지 징수방안이 유권기관의 법적 승인을 얻었을 경우  (2) 시, 현 인민정부와 토지관리부서에서 이미 토지관리법과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의 절차에 따라 토지 징수행위를 실시한 경우  (3) 징수대상 토지 소유권자, 사용자가 이미 법에 따라 안치 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치 보상을 거절함과 아울러 토지의 반납을 거부하여 징수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가져다 준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6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요건에 부합되는 신청에 대해 수리하기로 재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해야 한다.  **제15조** 최고인민법원이 이 전에 내린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农村集体土地行政案件**  **若干问题的规定**  （2011年5月9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22次会议通过）  法释〔2011〕2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农村集体土地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1年5月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2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9月5日起施行。  二○一一年八月七日  为正确审理涉及农村集体土地的行政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有关法律规定，结合行政审判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农村集体土地的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以下简称土地权利人）认为行政机关作出的涉及农村集体土地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提起诉讼的，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的受案范围。  **第二条** 土地登记机构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协助执行通知书或者仲裁机构的法律文书办理的土地权属登记行为，土地权利人不服提起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但土地权利人认为登记内容与有关文书内容不一致的除外。  **第三条** 村民委员会或者农村集体经济组织对涉及农村集体土地的行政行为不起诉的，过半数的村民可以以集体经济组织名义提起诉讼。  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全部转为城镇居民后，对涉及农村集体土地的行政行为不服的，过半数的原集体经济组织成员可以提起诉讼。  **第四条** 土地使用权人或者实际使用人对行政机关作出涉及其使用或实际使用的集体土地的行政行为不服的，可以以自己的名义提起诉讼。  **第五条** 土地权利人认为土地储备机构作出的行为侵犯其依法享有的农村集体土地所有权或使用权的，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应当以土地储备机构所隶属的土地管理部门为被告。  **第六条** 土地权利人认为乡级以上人民政府作出的土地确权决定侵犯其依法享有的农村集体土地所有权或者使用权，经复议后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法律、法规规定应当先申请行政复议的土地行政案件，复议机关作出不受理复议申请的决定或者以不符合受理条件为由驳回复议申请，复议申请人不服的，应当以复议机关为被告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七条** 土地权利人认为行政机关作出的行政处罚、行政强制措施等行政行为侵犯其依法享有的农村集体土地所有权或者使用权，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第八条** 土地权属登记（包括土地权属证书）在生效裁判和仲裁裁决中作为定案证据，利害关系人对该登记行为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第九条** 涉及农村集体土地的行政决定以公告方式送达的，起诉期限自公告确定的期限届满之日起计算。  **第十条** 土地权利人对土地管理部门组织实施过程中确定的土地补偿有异议，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但应当告知土地权利人先申请行政机关裁决。  **第十一条** 土地权利人以土地管理部门超过两年对非法占地行为进行处罚违法，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应当按照行政处罚法第二十九条第二款的规定处理。  **第十二条** 征收农村集体土地时涉及被征收土地上的房屋及其他不动产，土地权利人可以请求依照物权法第四十二条第二款的规定给予补偿的。  征收农村集体土地时未就被征收土地上的房屋及其他不动产进行安置补偿，补偿安置时房屋所在地已纳入城市规划区，土地权利人请求参照执行国有土地上房屋征收补偿标准的，人民法院一般应予支持，但应当扣除已经取得的土地补偿费。  **第十三条** 在审理土地行政案件中，人民法院经当事人同意进行协调的期间，不计算在审理期限内。当事人不同意继续协商的，人民法院应当及时审理，并恢复计算审理期限。  **第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根据土地管理法实施条例第四十五条的规定，申请人民法院执行其作出的责令交出土地决定的，应当符合下列条件：  （一）征收土地方案已经有权机关依法批准；  （二）市、县人民政府和土地管理部门已经依照土地管理法和土地管理法实施条例规定的程序实施征地行为；  （三）被征收土地所有权人、使用人已经依法得到安置补偿或者无正当理由拒绝接受安置补偿，且拒不交出土地，已经影响到征收工作的正常进行；  （四）符合《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第八十六条规定的条件。  人民法院对符合条件的申请，应当裁定予以受理，并通知申请人；对不符合条件的申请，应当裁定不予受理。  **第十五条** 最高人民法院以前所作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